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

>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> > 제 안 설 명



2023. 9.

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(더불어민주당, 양천3)

- □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안녕하십니까?교육위원회 우형찬 의원입니다.
- □ 본 의원이 발의한「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□ 본 조례안은 기존 필수노동자의 업무 현황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수준 등의 파악을 통한 단순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,
- □ 업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의 피해로 인해 추후 실태조사 이후, 올바른 이행 등의 추진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조항 마련으로서 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- □ 이에 안 제7조의 제목을 기존 '실태조사'에서 '실태조사 및 평가'로 수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